

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3고단4055 상해, 폭행
피 고 인 A , 회사원
검 사 박기완(기소), 이지륜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정원식(국선)
판 결 선 고 2014. 8. 28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[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]

피고인은 피해자 최○○(여, 30세)와는 부부 사이이고, 피해자 송○○(여, 11세)와는 피고인과 피해자 최○○ 사이의 딸인 관계이다.

[범죄사실]

1. 2009. 6. 18.경 피해자 송○○에 대한 상해

피고인은 2009. 6. 18.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송○○가 숙제를 하지 않고 일기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각목으로 피해자

의 팔,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,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.

2. 2011. 11. 30.경 피해자 송○○에 대한 상해

피고인은 2011. 11. 30.경 위 1.항 기재 장소에서 최○○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송○○에게 일기를 켜고 물었고,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일기를 쓰지 않았다고 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.

3. 2012. 7. 4.경 피해자 송○○에 대한 상해

피고인은 2012. 7. 4.경 위 1.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송○○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 타박상, 좌측 귓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.

4. 2012. 7. 7.경 피해자 최○○에 대한 폭행

피고인은 2012. 7. 7.경 위 1.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최○○이 '여호와의 증인' 회관에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최○○, 송○○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
1. 긴급피난처 입소사실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등, 각 수사협조의뢰,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, 각 수사협조의뢰서

1. 수사보고(근무일지 첨부), 진료일지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257조 제1항(상해의 점), 형법 제260조 제1항(폭행의 점), 징역형 선택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양형의 이유

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.

기록에 의하면,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고, 피해 아동이 불과 8세일 때 각목으로 아이를 때리고, 10세 무렵에는 발로 배를 차기도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친부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.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기는커녕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,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보호시설을 전전하게 만들었다.

몸에 남겨진 상처는 곧 아물지만, 누군가에게 당한 폭력의 기억은 그 동기를 불문하고 쉽게 아물지 않은 채 오랫동안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인바, 특히 유년시절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평생토록 피해아동을 괴롭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.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이다.

자폐 등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첫째 아들에 대한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피고인의 처나 이 사건 피해아동 역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.

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, 현재는 피해

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는 점, 재물손괴, 폭력, 음주운전 등 전과 12회이나 벌금형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,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박주영 _____